

# CLFA

## 한국대부금융협회

(100-070)서울 중구 남대문로5길 39 한국YMCA전국연맹빌딩 202 / TEL 02)3487-5800 / FAX 02)6670-9650 / WWW.CLFA.OR.KR

문서번호 : 기획업무-2014-041

발신일자 : 2014. 5. 15.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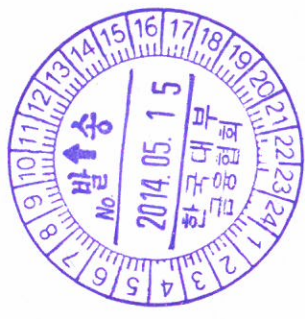
참 조 :

제 목 : 세월호 사고피해 관련 금융지원 현황 조사 안내사항

1. 서민금융 발전에 힘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세월호 사고피해 관련 금융지원 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변경된 조사서식 및 추가사항을 안내하오니 변경된 조사서식 및 관련 안내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불임 : 1. 금융지원 현황 조사서식(변경된 것). 1부.  
2. 관련 안내사항. 1부.

※ 문의 : 기획조사부 (전화 02-3487-5800, 내선 3). 끝.



한국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장



● 수신처 :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외 267개 회원사 대표이사 귀하

※ sheet명, 단위, 셀서식 등 작성양식 일체 임의변경 절대 금지!!

<안산시, 진도군\* 거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 유예 관련>

\* '14.4.20. 특별재난지역 선포

|     |  |       |  |
|-----|--|-------|--|
| 업체명 |  | 작성기준일 |  |
|-----|--|-------|--|

작성자 : (성명) , (직위) , (전화번호) , (e-mail)

확인자 : (성명) , (직위) , (전화번호) , (e-mail)

(단위 : 건, 백만원)

| 구분  | 전체 <sup>1)</sup> |           | 채권추심 유예 대상 <sup>2) 3)</sup> |           | 실제로 채권추심을 유예 <sup>2) 3)</sup> |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| 대부건수(건)          | 대부잔액(백만원) | 대부건수(건)                     | 대부금액(백만원) | 대부건수(건)                       | 대부금액(백만원) |
| 안산시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진도군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계   | -       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|

※ 5.12일부터 매일 현재 수치를 익일 10시까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보고

<작성요령>

1) '14.5.9일 기준 당해 업체의 보유채권 중 채무자의 주소지가 '안산시' 또는 '진도군'인 채무자의 대부건수 및 대부잔액을 산정(이후 동 대부건수 및 대부잔액은 고정)

2) 원금 또는 이자 납입일이 도래하였으나 상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을 유예한 건수 및 금액을 기재(누계)

※ 원(리)금분할상환의 경우 원(리)금분할상환액을 기재, 이자만 연체된 경우 이자액만 기재,  
기한이익 상실채권 및 만기일내 상환의 경우 원리금 총액을 기재

3) 채권추심을 유예하였으나 채무자가 상환한 경우에는 거래건수, 대부금액에서 제외할 것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채권추심 유예 외에<br>실시한 금융지원방안이<br>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채권추심 유예<br>불참 사유<br>(불참시에만 기재)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| 안산·진도 외 지역의<br>실제 피해자에 대한<br>금융지원 내역 | 신청 현황   |           | 실제로 채권추심을 유예 |           | 기타 금융지원 내역<br>(상세하게 기재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부건수(건) | 대부잔액(백만원) | 대부건수(건)      | 대부금액(백만원)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세월호 사고피해 관련 금융지원 안내사항

2014.5.15 한국대부금융협회

### □ 안산시·진도군 거주 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

- 전화·방문 등 채무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채권추심 업무를 3개월간 중단
- 다만, 연체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등이 부과되어 채무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면 또는 SMS 등에 의한 안내(고지)는 필요한 최소 범위\*에서 실시

※ 약정일, 납입금액, 연체해당 여부, 연체이자,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

- 연체정보 등록 가능(기존 연체등록 해제 불필요)
-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“긴급민생대책회의 후속조치 추진 계획(5.11)” 참조

### □ 안산시·진도군 이외 지역 거주 실제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실적 보고

- 안산시 또는 진도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지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채무자가 금융 지원을 요청한 경우

#### 1) 사고·사망자 채무유예감면 협약 참여회사

☞ 협약의 “사고자”와 같이 금융지원(상환유예 또는 채무감면)을 적용하고, 조사양식에 실적 작성

#### 2) 협약 미참여사

☞ 안산시·진도군 지역 거주자와 동일한 금융지원(채권 추심 3개월 유예 등) 실시 후 조사양식에 실적 작성

- 상기 사항과 관련 조사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협회 홈페이지 회원전용게시판에서 조사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,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현황 회신 방법

- 협회 홈페이지 회원전용게시판에서 회신서식(엑셀파일)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(rdclfa@clfa.or.kr)로 발송

※ 효율적인 파악을 위해 반드시 이메일 송부할 것

- 이메일 발송 시 제목 작성 요령  
“140512 OO대부 세월호 금융지원 현황”  
“140512 OO대부 세월호 금융지원 현황(어제와 동일)”
- 발송 시 첨부파일 이름 작성 요령  
“140512.OO대부.세월호.금융지원현황.xls” 로 기재
- 계열사가 있는 경우 계열사 자료를 취합하여 계열사별 별도 파일로 회신
- 향후 금융지원 현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협회로 고지(공문, 이메일 등 가능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 
예시) ‘채권추심 유예 대상’ 실적 및 ‘실제 채권추심 유예’ 실적에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 • 조사서식 작성요령

☞ 안산시·진도군 거주 채무자에 대한 **전체 채무현황은 14.5.9일 기준으로 고정할 것**(이후 변동 금지)

※ 전체 채무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**대부금액은 “백만원” 단위로 작성**(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기재)

☞ ‘채권추심 유예 대상’ 과 ‘실제 채권추심 유예’ 실적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사유를 “불참 사유”에 기재하여 송부